

2025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공고

민간투자 유치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고도화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모집규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4社 이상

공고기간 : 2025. 2. 12(수) ~ 2025. 3. 5(수) 17:00까지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krhjlee@ekr.or.kr) ※ 접수 후 유선확인 권고

지원금액 : 최대 500백만원/社, 자부담 별도 (총 사업비의 30% 이상)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민간투자 유치로 사업성을 인정받은 농촌융복합 우수기업에 대한 후속 매칭지원으로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 촉진
- **지원예산** : 20억원 (국비 100%) ※ 기업당 최대 5억원 지원 (자부담 별도30%)
- **사업기간** : 협약일 ~ 25. 12. 31.
- **선정규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4社 이상
- **지원대상** : 최근 2년간 민간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 완료한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중 상세요건을 만족하는 자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4.신청자격] 반드시 참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 스케일업 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민간 투자사가 투자한 이력이 있는 유망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성장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 사업규모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 기업자부담 30%

① 정부 지원금(70%)

- 기업당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최대 5억 원, 4개社 이상 지원
- 사업화자금은 민간 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예시] ‘민간투자(3억원):사업화자금(3억원)’, ‘민간투자(6억원):사업화자금(5억원)’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② 기업 자부담(30%)

- 기업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필수 (VAT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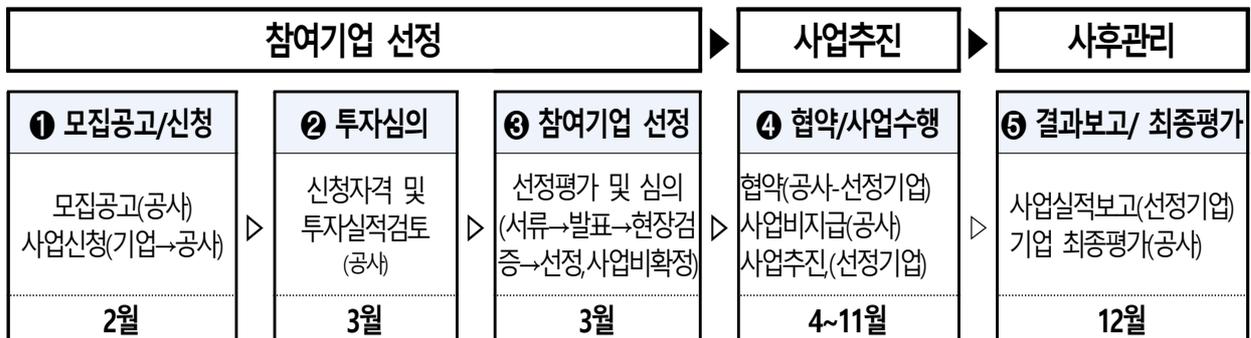
< 사업비 구성 예시(단위: 백만 원) >

기업 민간투자 유치자금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기업 부담금(자부담)	
			현금	현물
500	715	500	72	143
	100%	70%	10%	20%

* 자부담중 현금(10%이상) 는 협약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

** 사업비 중 국고지원금은 3회로 나눠 분할 지급하며, VAT는 기업 부담임

□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 및 세부내용은 사업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신청) 및 선발

- 모집(신청)기간 : '25. 2. 12. (수) ~ '25. 3. 5. (수) 17시까지
- 모집규모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4社 이상
- 지원예산 : 최대 500백만원/社
 - 사업화자금은 민간투자금과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 5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 *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투자금 보다 사업화 자금을 가감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최근 2년간 민간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 완료한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 중 상세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상세 지원대상 요건은 [4.신청자격] 반드시 참고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 *신청후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

※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스케일업 담당자
 - (이메일) krhjlee@ekr.or.kr / (연락처) 031-8084-9556

□ 선정평가 일정(안)

① 모집공고· 접수	② 사전검토	③ 투자심의	④ 선정평가	⑤ 최종선정
농식품창업정보망, K-Startup, 6차산업닷컴 등	신청자격검토 (공사)	기 투자금의 적절성 및 인정금액 평가 (투자심의위원회)	서류→발표→현장검증 (선정평가위원회)	최종 대상자 선정 사업비 확정 (별도공지)
2. 12 ~ 3. 5.	3월 초	3월 중	3월 중	3월 말

* 평가 일정은 신청 자격 검토 결과 적격 기업에 한해 개별 통보 예정

□ 선정평가 방식

- (사전검토) 필수 제출서류, 지원제한 해당여부 등 기본 요건 검토(공사 내부검토)
- (투자검증) 신청기업별 제출한 투자계약서, 투자확인 서류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의 적절성 및 투자금액 인정 여부 등 결정
 - * (위원회구성) 투자전문가, 회계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 3인 내외

○ (선정평가) 서류심사→발표심사→현장검증 순으로 진행

- ① (서류심사) 투자검증 결과 적격 판정된 기업 대상으로 서류심사 추진
 - ② (발표심사) 서류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발표심사 추진
 - ③ (현장검증) 최종점수(서류30%, 발표70%) 순위에 따라 현장검증 추진
- * (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 평가위원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선정
- ** 현장검증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시설, 인력 등을 점검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시 탈락 가능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안)]

구분	항목	배점	내용
서류 (30%)	계	103	
	사업계획	40	계획의 구체성(15), 계획의 타당성(15) 사업비 지출 계획의 합리성(10)
	성장가능성	40	기업 성장 가능성(20), 사업 아이템의 혁신성(20)
	정책부합성	20	사업목적 부합성(10), 산업기여도(10)
	가점	3	'24년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기업(1) '24년 투자유치 10억원 이상(2)
발표 (70%)	계	100	
	기업역량	35	사업 추진역량(15), 사업계획의 적정성(15), 추진 의지(5)
	사업성	35	시장경쟁력(15),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10), 기대효과(10)
	기술성	30	기술·제품의 우수성(10), 기술·제품의 개발가능성(10) 기술 역량 보유 현황(10)
현장	연구시설·장비, 인력, 생산설비 등 사실관계 검증, 사업수행 가능여부 검토		

< 평가 주의사항 >

- 평가는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산술평균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최종 점수는 서류 점수 30%, 발표 점수 70% 반영하여 산출
- 발표평가 시 신청기업의 **대표자 직접 발표 원칙**,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업의 본 사업참여 소속 직원에 한해 공사의 승인 후 제3자가 발표 가능

- (최종선정) 최종점수(서류30%, 발표70%) 및 현장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 * 중도포기, 협약해지 등을 고려하여 예비 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평가 시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추가공고 및 평가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음

□ 선정 결과안내 : 최종 선정기업 별도 공지

□ 지원 상세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아래 ①~③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상세요건

①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 중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② 최근 2년간(23.01.01~공고마감일) 민간투자를 유치(투자확약* 포함) 완료한

* 투자확약(투자유치 예정) 기업은 투자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가능
(단, 선정 시 협약체결일 전까지 투자가 완료되어야 함)

③ 다음의 ㉠~㉣ 요건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력 7년 미만인 기업

* 인증 업력은 최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함

㉡ 인증사업자 중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벤처확인 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업력 제한 없음

㉢ 인증사업자 중 최근 2년(23~24년) 연평균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 상기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인증 업력 제한 없음

< 인정 가능한 민간투자 >

※ 하단의 기관으로부터 투자(확약) 받은 경우 인정가능하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업별 투자이력, 가치환산금액에 대해 심의 예정

① 창업기획자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④ 글로벌 투자·보육 전문기관*

② 벤처캐피탈 (LCC 등 포함)

⑤ 개인투자조합**

③ 기업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⑥ 기타 (기술지주사, 신기술창업전문사)

* 해외본사가 있는 경우 국내법인(지사 등)이 있으며, 국내 법인이 자체적인 투자재원 및 투자 결정권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 개인 투자는 인정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공고문,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창업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농식품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은 불가능함 (중복 수행 불가)
 - ※ (주의) 본 사업 협약체결 후 유사 사업 [참고 3] 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본 사업 협약은 즉시 해지되며 사업비는 전액 회수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만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주의)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창업지원 정부사업(R&D지원사업 제외)의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 농식품부 및 타 부처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도 신청은 가능하나 본 사업과 동시에 수행(협약) 불가능(중복 수행 및 협약 불가)
 - ** (창업지원 정부사업)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고3]에 해당하는 사업
- 본 공고 모집 마감일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부도, 휴·폐업기업,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
-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 평가 및 현장점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① 본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참여제한 및 제재 부가금 등)을 받게 됩니다.
-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에도 공고문, 매뉴얼, 주관기관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중복 및 창업 여부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회수·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주관기관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회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업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협약종료일+6개월, 선정기업 부담) 제출 필수

※ (주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선정기업은 협약 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국고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
- 선정기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이하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현금)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사업기간내에 요청하는 자료 제출, 보고,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신청기업은 사업기간 중 집행한 사업비(자부담포함)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차수별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함

- 정부지원금 지급 시기 및 사용방법은 선정자 대상 별도 안내

- 특히 사업종료 후 회계법인을 통해 전체 사업비(자부담 포함)에 대한 정산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함.
 - 단,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가능한 금액은 집행금에서 필히 제외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의 기준 등에 따름

7

문 의 처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 접수 및 문의처 : 산업육성부 스케일업 사업담당
- 이메일 : krhjee@ekr.or.kr / 유선번호 : 031-8084-9556

참고 1

신청 시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작성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사업참여 자가진단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3	
	4	사업계획서	서식4	
	5	(용역/공정개선/시설장비도입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각 1부	서식5	
증빙 서류 (필수)	기업 정보	4	사업자등록증	참고4
		5	법인등기부등본	
	자격	6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7	벤처기업확인서 * 해당시 제출	
	투자	8	투자계약(확약)서	
		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매출	1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2년~24년, 3개년)	
		11	기업 재무제표(22년~24년, 3개년) * 2024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추후 제출	
	고용	12	(고용증빙)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사실 증명	13	총사업자등록내역 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현재 지원하는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각각 제출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등록증 혹은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 사실증명 내 기재된 모든 사업자 중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현황 증명원(지분률 포함) 사본 - 총 사업자등록내역은 기간은 전체로 출력(발급) **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 여부 /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증명원)	
		14	폐업사실증명원 * 해당시 제출	
		15	납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공장	16	공장등록증 * 해당시 제출(공장등록 기업 경우)	
	기타서류 (선택사항)	17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제출 유의사항 >

- 제출서류는 번호순으로 폴더 생성 후 폴더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최종 1개 파일로 압축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 메일제목 및 첨부파일명 준수 : [민간투자 스케일업]_업체명_대표명.zip
-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허위 작성 발각 시, 사업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제출한 자료는 반납되지 않음)

참고 2

사업비 예산 비목

구분	비목	세부 사항	비목 정의	국비	자부담	
					현금	현물
직접비	인건비	직원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신규 및 기존 직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신규인력)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전~협약기간내 신규 채용 또는 예정자 * (기존인력)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에 한함(대표자 제외) - 과제책임자는 30% 이상 사업참여 필수 * 인건비 계상 : 월급여(A) X 참여기간(B) X 참여율(C)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합산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규	○ 신규 + 기존	○ 신규 + 기존
	재료비	재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원료 구입비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소모품 경우 : 비품, 사무용품, 시험용기, 공구 등 기능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의 합산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시설장비비	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기술개발, 성능개선,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기구·장비·설비, S/W 등 구입·구축 및 임차료 비용 * 사업계획서 상 연관성이 높고 주관기관이 사전승인 득한 경우에만 구매 가능 (사무용 집기, 가구 기구, PC는 불가) * 기존 시설장비 현물 인정 금액 - 공고마감일로부터 과거 4년 이내 구입 건에 한하여 인정 - 현물 환산액 : (기존 시설장비 구입금액)/5*(사업개월/12개월) * 세부사용계획 제출 必 (서식-5 참조) * 총사업비(국비+자부담)의 50% 및 총 국고지원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비 50% 이하	○	○
	공정개선비	공정개선 개발 및 설계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 * 세부사용계획 제출 必 (서식-5 참조) 	○	○	제외
	용역비	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기술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할 수 없는 활동(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등)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비용 지급 * 사업 결과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 * 세부사용계획 제출 必 (서식-5 참조) 	○	○	제외
간접비	지급수수료	전문가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 기술이전비,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체류비, 교통비 제외),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위한 기자재 임차비, 택배·물류비 등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 인증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	○	제외
		기자재임차·물류비				
		시험분석				
		국내외 박람회 등 참가				
	홍보자료 번역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월별 감사 및 회계정산 수수료	○	○	○	
기술이전·가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합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	○		
지식재산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 국고지원금의 1%로 책정 	○	○	○		
교육훈련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 임직원의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비용 * 국고지원금의 1%로 책정 	○	○	○		
임차비	사무실 공장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 사무실(본점, 기업부설연구소) 및 공장(제조가공) 임대료 *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금 합산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	○	
광고선전비	홈페이지 구축 포장지·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 광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TV·일간지·온라인광고 등의 직접 광고 홍보비,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제외	
회계정산비	사업비 회계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월별 감사 및 회계정산 수수료 * 국고지원금의 1%로 책정 	○	○	제외	
기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아이템과 연관이 있는 항목 중 위의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 되지 않는 항목은 담당자와 협의 후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활용 가능 *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불가 항목 별도 기재 	○	○	제외	

* 현물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 임차료로만 사용 가능,

** 해당 사항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매뉴얼을 따르며, 변경될 수 있음

참고 3

중복수혜 불가 정부 지원사업 목록

소관부처	전담(주관)기관	사 업 명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 혁신거점 조성사업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 첨단기술)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기부	창업진흥원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창업중심 대학사업
		생애최초청년창업지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복지원은 가능하나 중복수혜(협약)는 불가함

** 위의 사업 외 타 중앙부처의 창업지원사업(중기부 통합공고 기준, 24년 12월) 수혜기업인 경우, 문의 후 사업지원

참고 4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발급

-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② 로그인(대표자명으로) → ③ 민원증명
 → ④ 사실증명신청 → 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창업이력이 없는 경우 발급)
 → ⑥ 총사업자등록내역(창업이력이 있을 경우 발급-기간은 전체로 설정)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portal with the following elements:

- Navigation:** HomeTax logo, '민원증명' menu, and '사실증명신청' link.
- Service List:** A grid of services including '국세증명신청', '사실증명신청', '민원증명 연도확인', etc.
- 민원증명 신청/조회:** A list of services with '사실증명신청' highlighted.
- 민원증명발급신청:** A list of services including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자등록증', etc.
- 공지사항:** Notices regarding tax services and system updates.
- 민원증명 메뉴:** A dropdown menu with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and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highlighted.
- 사실증명신청 테이블:**

사실증명(제납내역)	신청하기	이용합니다.	법인증: 문점(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사실증명(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신청하기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신고사실여부)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사업, 연금,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⑤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신청하기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개인증: 주민등록번호 법인증: 문점(지점)사업자 등록번호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하기	상호, 소재지, 업종 변경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신청하기	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공동사업자내역)	신청하기	공동사업자 등록(지분) 또는 말퇴 등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필요
사실증명(사업자단위과세 승인사실증명)	신청하기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음에 따라 종량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었음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사실증명(연속과제개설여부)	신청하기	법인이 「상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연속과제개설을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신청하기	민원인이 근무한 폐업 사업체의 폐업일, 업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실증명(개발서비스비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여부)	신청하기	수출물품에 대한 개발서비스비 공제 또는 환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하기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하고자하는 경우 이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
- Notice:** '신청: 09:00~24:00' and '※ 신청결과는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Footer:** '증명서 수령방법' and '인터넷발급: 민원증명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증명서를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p>작성 요령</p>	<p>[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 2. 업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분량을 조절하여 기술(항목 삭제 불가) 3. 사업화 과제명 : 제안 사업화 아이টে을 간략하게 표현 4. 파란색 안내 문구 및 안내박스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며, 작성 후 안내박스 가이드는 삭제하여 제출 5.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되, 특히 시장 및 기술 동향, 선행기술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등을 기술 시 객관적인 데이터 및 출처 제시 요망 6. 제출 파일 중 <u>사업신청서</u>[서식1], <u>자가진단표</u>[서식2], <u>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u>[서식3], <u>사업계획서 첫장</u>[서식4]은 반드시 서명(도장) 포함 7. 사업계획서 내의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운영에 사용되므로 [참고2]의 예산비목 및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작성 <p>6. <u>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 : 40페이지 내외</u>(기타 참고자료 제외)</p>
<p>유의 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류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 필수서류 미 제출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3. 접수된 서류와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5.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농촌융복합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참여 자가진단표

해당 시 체크

가점 대상 (체크 시 해당 증빙 제출 필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한국농어촌공사 사업 참여	'24년 농촌융복합 액셀러레이터 육성 참여 기업	제출서류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확인) <input type="checkbox"/>
2	민간 투자	'24년 투자 유치 10억원 이상 이력 (확약제외)	투자확인서류 <input type="checkbox"/>

필수 신청 자격요건 (3~5번 3가지 요건 충족 시 신청 대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증받은 경영체		<input type="checkbox"/>
4	최근 2년간(23.01.01~공고마감일) 민간 투자사로부터 투자유치(확약포함)를 받았다.		<input type="checkbox"/>
5	아래 ㉠~㉣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 공고마감일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력 7년 미만이다. * 인증일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인증서' 최초 신규인증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 인증사업자 이면서 「벤처기업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다.		<input type="checkbox"/>
	㉢ 인증사업자 이면서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다.		<input type="checkbox"/>

지원 제외 대상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			
6	신청한 사업 아이템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성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7	신청기업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상태이다.		<input type="checkbox"/>
8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input type="checkbox"/>
7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input type="checkbox"/>
8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		<input type="checkbox"/>
9	유사 창업지원 정부사업(참고3-중복수혜불가 사업 참조) 협약 유지중이다.		<input type="checkbox"/>
10	농촌융복합 민간투자 스케일업 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에 하나 이상 해당한다.		<input type="checkbox"/>

위의 사항과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지원금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소속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귀하

2025 농촌융복합분야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작성일	2025년 월 일
수행기업명	
대표자 (신청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 귀중

- ※ 사업수행계획서 양식(항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지 말 것
- ※ 반드시 한글(hwp)로 작성하며, 폰트는 휴먼명조 11p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수행계획서는 40페이지 내외로 작성(표지 제외), 공란 없이 최대한 상세히 기재할 것

I 기업 현황

1. 개요

기업명	00법인 주식회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번호	0000-00-000	
대표자	홍길동 (00년생)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설립일	0000.00.00	
매출액	2022	백만원	고용인원* (4대보험가입자)	2022	명
	2023	백만원		2022	명
	2024	백만원		2024	명
투자실적	투자시기	투자금	투자처	투자아아템	
	인증일 ~24년	백만원			
	2022	백만원			
	2023	백만원			
	2024	백만원			
사업장 주소					
사업장 현황	(자가, 임차) (공장등록, 미등록) 대지 : 평, 건평 : 평				
기업소개 (요약)	* 기업소개 간략히 작성				
	1차		2차		3차
	딸기		딸기잼, 주스		체험농장
주요연혁* (인증 이후 기업의 특기사항을 연혁 순으로 기재)	기간		주요내용		
	0000.00.00~0000.00.00				

* 주요연혁은 설립, 상호·대표변경, 합병·분할·상장내용, 민간투자 등 관련 내용 기재

2. 주주 및 경영진 구성

(단위 : 백만원, %)

주주 구성				경영 · 기술진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	성명	나이	담당업무(직위)	학력 및 경력
					00년생		
계							

3. 주요 재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매출액은 증빙기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작성하며, 증빙자료 제출必.

** 신청일 현재 2024년도 재무제표 미발급 경우 :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 기준으로 매출액 작성 (총자산, 총부채 등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

4. 민간 투자 세부내용



※ 민간투자사로부터 투자받았거나 예정인 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관련내용 증빙 서류 별도 첨부할 것

사업계획 개요

사업화 과제명	신청기업 일반현황의 '사업화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예시: 농촌융복합산업인증 농산물을 이용한 과채 한방 어린이 주스 생산, 판매)
----------------	---

아이템명	* 사업화 과제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체험프로그램 명칭					
아이템 소개	※ 동 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의 핵심 규모,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사업아이템에 접목된 핵심기술과 이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작성					
(현재 기준) 사업화 추진단계 및 추진현황	사업아이템 발굴 조사 및 기획	제품 및 생산 시설 설계	시제품 제작	기술·공정개선 상품화 개선	양산화	출시·판매 및 홍보마케팅
		√				
	※ 현재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업단계를 체크(중복 가능)하고 관련 사업화 내용 및 현황을 기재 예) 연구개발,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중, 개발 완료, 고도화, 제품 출시 등					

<p>'25년 아이템 개선 사항</p>	<p>※ 2025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의 개선사항(25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p>				
<p>'25년 사업 계획</p>	<p>※ 투자유치, 매출증가,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등 스케일업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현 추진단계를 토대로 2025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목표, 추진방안, 예상결과 등)</p>				
<p>'25년 사업화 성과 목표 (정량 및 정성)</p>	<p>정 량</p>	<p>< 기관제시(3건) ></p>		<p>< 기업제시(3건) ></p>	
		<p>성과 지표</p>	<p>달성 목표</p>	<p>성과 지표</p>	<p>달성 목표</p>
		<p>매출액 증가율(%) ※ '24년 대비 '25년 증가율</p>	<p>증 30% * 고정목표</p>	<p>※ 성과지표 작성</p>	<p>※ 목표수치 작성</p>
		<p>고용인원 증가(명) ※ '24년 대비 '25년 증가인원</p>	<p>※ 목표수치 작성</p>	<p>※ 성과지표 작성</p>	<p>※ 목표수치 작성</p>
		<p>후속투자유치(억)</p>	<p>※ 목표수치 작성</p>	<p>※ 성과지표 작성</p>	
	<p>정 성</p>				

1. 사업 경쟁력

1-1. 시장 경쟁력

※ 산업주기(개발, 성장, 성숙, 쇠퇴)상 해당 기업의 사업화 단계, 해당분야 시장 분석(시장규모, 전망), 해당기업 아이템의 시장점유율(현황·예측), 기술 및 아이템의 시장 선도 가능성 등

산업 주기 및 위치

* 사업화 아이템의 단계별 개발, 성장, 성숙, 쇠퇴기로 볼 때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계 기술

○

사업아이템(또는 해당분야)의 시장규모 및 전망

○

경쟁사 대비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사업 아이템의 시장 점유 가능성 및 선도 가능성

○

1-2. 사업화 경쟁력

기반 시설 보유 역량

※ 제품생산, 기술확보 등을 위한 보유시설의 역량을 기재

○ 기반시설 보유 역량

-

○ 생산 및 연구시설 등 기반시설 보유 현황

생산·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내용)	활용시기	구입 가격	구입 년도
0000						
0000						

□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 아이템과 관련한 판로개척 마케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 및 경쟁력 기재

○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점

-

○ 최근 3년간 마케팅을 위한 노력

추진 사항	추진 기간	세부 내용

□ 보유 기술역량

○ 보유 기술 내용

- 보유기술 아이템 기술
- 보유기술의 완성도 및 경쟁사 대비 경쟁력 기술

○ 보유 기술(지식재산권) 현황

순번	지식재산권 번호	특허기술·지재권명	등록국가	등록자(기관)	등록일자
		국내, 해외특허, 국제인증 등 포함			

○ 등록사항 이외의 연구개발 현황

- 국내 및 국제협약 체결 현황(MOU 등)

□ 기타 기업역량

※ 기업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구성원의 역량, 시장 대처 능력, 창업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협력사의 주요역량 및 협력사항 등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의 자체 역량을 기재

○ 경쟁 대처능력, 국내외 시장환경 유연성 대처능력

-

○ 업무파트너(협력기업 등) 현황 및 역량

순번	파트너명	주요역량	주요 협력사항	비고
1	00제약		공동연구개발	~'24.12
2	000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협력 예정

1-3. 대표자·직원의 인적 역량

기업 조직도

○

대표자 현황 및 역량

※ 사업아이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력, 역량 등을 기재

○

-

직원현황 및 역량 (조직역량)

※ 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역량 등

	성명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 분야	채용 년월	본사업 참여율 (%)
				학교	전공	최종 학위	취득 년도			
1										
	주요 경력									
2										
	주요 경력									
3										
	주요 경력									
4										
	주요 경력									
5										
	주요 경력									

1-4. 그 간의 사업추진 실적

내수시장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마트	2019.2.14.~2019.2.22.		○○○백만원
...			
...			

글로벌 진출 실적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			

글로벌 진출 역량 ※ 관련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건	○○건	○○건
...		
...		

자금조달 실적

조달금액	조달방식	조달처
○○○○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 용자, 국고지원금(사업명)	기관명
...		
...		

기타(그 간의 실적)

--

2. 사업화 문제 인식

※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화 과제명 및 아이템과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및 내용 기재

현황 및 문제점

○

-

해결해야 할 과제 * 제품·서비스, 고객니즈, 시장·경쟁자 대비 개선 등 해결할 사항 기재

○ 제품·서비스

-

○ 고객의 니즈

-

○ 시장·경쟁자 대비 개선

-

3. 사업 고도화 계획

- ※ 사업화 과제를 개발(개선)하는데 인지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 고도화 전략, 추진 내용, 일정 등 기재
- ※ 투자유치, 매출증가, 기술고도화, 판로개척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케일업 전략 수립

3-1. 사업 목표

사업 목표

○

-

3-2.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25년~'27년, 3개년)

사업고도화 추진 전략 및 내용	2025년	1/2	
		2/4	
		3/4	
		4/4	
	2026년	1/2	
		2/2	
	2027년	1/2	
		2/2	

3-3. 사업화 과제의 고도화를 위한 '25년도 세부 계획

사업추진 전략

○

-

사업추진 내용(상세 계획)

○

-

3-4. ('25년) 사업추진 일정

구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시설/장비 구축	■											
3	제품개발 원재료 구입	■	■	■	■								
4	기술개발, 시험분석			■	■	■	■	■	■				
5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	■	■								
6	시제품개발					■	■	■	■				
7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	■	■		
8	최종보고서 제출											■	■

4. 25년도 스케일업 전략

4-1. '25년 사업 성과목표

- ※ 사업 성과 목표는 사업최종보고 및 평가시 정량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 ※ 기관제시 목표 : 필수 설정 항목, 매출 및 투자금액의 경우 금액 또는 전년대비 %로 기입
- ※ 기업제시 목표 : 3건 이상 목표설정(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기업 및 사업특성에 맞게 설정)

구 분	성과 지표 및 목표		
목 표 명	25년도 성과창출을 위한 아이템(기술) 개발 등 목표 기술		
기관 제시 (필수)	기업 매출	투자유치	고용인원 증가
	(전년대비) 30%(고정)	백만원	명
기업 제시 (3건)	(예시)시제품개발	(예시)특허출원 및 등록	(예시) 0000
	건	건	건

4-2. '25년 목표 달성전략 * 기관제시 및 기업제시 성과지표 목표 및 달성전략 기술

사업 아이템

추진전략 및 내용

- 주 아이템(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특허등록, 논문등재, 기술이전 등 관련한 내용

기업매출 성장

- '25년도 매출신장 목표 : 전년대비 증 30%(고정)

- 내수시장 확보방안

-

- ※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 내수시장 매출예상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000	2000.0.0. ~ 2000.0.0.		000천원
...			

○ 해외시장 진출방안

-

※ 주 소비자층, 주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 해외시장 예상 매출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유통채널명	진출 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00마트	2000.0.0. ~ 2000.0.0.		000천원
...			

□ 투자 유치

○ '25년도 후속 투자유치 목표 : 00억원

○ 투자유치 방안 및 계획 ※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엔젤투자, VC(벤처캐피탈), 클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 향후 투자유치 추진전략 및 방법 등 기재

□ 고용 증가

○ '25년도 고용 목표 : 전년대비 증 00명

○ 추가 인력 고용계획

순번	주요 담당업무	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	채용 시기	청년 여부 (만 39세 이하)
1				○ / X
2				

□ 기업제시 성과지표(3건)

*기업제시(3건) '25년도 성과목표 달성전략 기술

성과지표	목표	달성전략
(예시)시제품개발		
(예시)특허출원 및 등록		
(예시) 0000		

□ 기타

* 기업 특성에 따른 성과목표 설정 할 경우에만 사용(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시)

○

5.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5-1.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참고2] 사업비 예산비목을 참고하여 작성

소요예산 총괄표 (매칭금액 한도 내에서 필요금액 수준으로 작성)

* 총사업비 = 국고지원금(투자금 매칭금액, 최대 5억원) + 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 이상, 현금·현물)

비 목	사업비 합계 (A+B)	세부 사업비 (천원)				산출근거내역
		국고 지원금(A)	자부담(B)			
			소계(a+b)	현금(a)	현물(b)	
합 계						
직 접 비	소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장비비					
	공정개선비					
	용역비					
간 접 비	소계					
	지급수수료					
	임차비					
	광고선전비					
	회계정산비	국고지원금 의 1%				*고정금액(추후 변경될 수 있음)
	기타					
비율	100%					

[국고지원금] 비목별 소요예산 상세 계획

○ 인건비

※ 국고지원금 인건비 : 해당 항목의 인건비는 자부담분의 인건비에 계상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신규 고용인력에 한해 지급 가능
- 신규고용인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전 부터 사업종료일 이내에 신규채용한 자

(단위: 천원)

비목	인력 구분	채용 시기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계 (A×B×C)	비고
인건비 (신규)	신규	00.00.00	000	사원	3,500	8개월	50	-	
	신규	예정	000	대리	2,000	8개월	20	100	
	신규								
	신규								
합 계									

※ 참여인력 당 참여율은 최대 100%를 넘을 수 없음

○ (인건비 외) 사업화 자금 소요명세

(단위: 천원)

구 분		규격	단위	수량 (회수)	단가 (천원)	금액 (천원)	용도	
비목	상세 내역							
직 접 비	재료비							
		소 계						천원
	시설 장비비							
		소 계						천원
	공정 개선비							
		소 계						천원
용역비								
	소 계						천원	
직접비 소계							천원	
간 접 비	지급 수수료							
		소 계						천원
	임차비							
		소 계						천원
	광고 선전비							
		소 계						천원
	회계 정산비	회계정산비	건	건	1		사업비 집행관리 및 정산	고정
		소 계						천원
	기타							
		소 계						천원
간접비 소계							천원	
인건비 외 국고지원금 합계							천원	

□ [자부담 : 현금+현물] 소요예산 상세 계획

○ 인건비 소요명세

- ※ 신규고용인력은 국고지원금 및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기고용인력은 자부담금(현금, 현물)에서 인건비 집행 가능
 ex) 자부담금 90백만원(현금 30백만원, 현물 60백만원)인 경우, 현금 인건비 최대 30백만원, 현물 인건비 최대 60백만원 동시 계상 가능(단, 인건비는 총사업비(국고지원금, 자부담 합산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고용인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이전부터 사업종료일내에 신규채용한 자
- ※ 월급여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으로 함. 실지금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 참여율은 정수만 인정(소수점이하 불인정), 합계는 정확해야함(반올림 불인정), 사업책임자는 반드시 참여율 기재되어야 함

(단위: 천원)

비목	인력 구분	현고용 여부	고용 일자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 계 (A×B×C)		
									현금	현물	계
인건비	기존	고용	00.00.00	000	과장	3,500	8개월	70	-	0000	0000
	신규	예정	00.00.00	000	대리	2,000	8개월	20	0000	-	0000
합 계											

- 인건비 외 소요명세

- ※ 현물 산정 가능 비목 : 재료비, 시설장비비, 임차비에 한함

(단위: 천원)

비목		환산액			산출내역	비고
비목	품명	현금	현물	계		
직접비	재료비	-	0000	0000		
		0000	-	0000		
	소 계					
	시설 장비비					
소 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임차비					
	간접비 소계					
인건비 외 자부담(현금·현물) 합계						

기타 참고자료

제품(기술, 서비스) 참고 이미지, 인증 및 상장 등 기타서류 목록
2페이지까지 사용가능

- 2페이지 초과 시에 초과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기타서류는 선택제출사항이므로 목록만 요약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 자료는 별첨으로 압축하여 신청 시에 업로드 해야 함

